

##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b>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</b>			
제9조 효력 및 계약기간	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 ]년 [ ]월 [ 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	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 ]년 [ ]월 [ 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“갑”과 “을”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	오타자 정정
제10조 계약해지	1.7 “갑”이 제 2 조 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	1.7 “갑”이 제 2 조 <u>제2항</u> 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	오타자 정정
제10조 계약해지	제 1-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, 제 1-2항, 제1-3항, 제1-4항, 제1-6항 및 제1-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	2. 제 1-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, 제1-2항, 제1-3항, 제1-4항, <u>제1-5항</u> , 제1-6항 및 제1-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	오타자 정정

	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
제15조 준용사항		4. 갑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, 을은 갑에게 가상계좌 이름 등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갑은 이에 응하여야한다.	가상계좌 사용 제한 업무 관련 고객 준용 사항 추가